

주기적안전성평가 보고서에서 관련법규의 적용성 검토
comparison with Periodic Safety Review Report and
Korean Nuclear Power Laws

문호림, 박준현, 정일석, 김태룡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103-16

박홍배, 진태은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마북리 360-9

요약

주기적안전성평가(Periodic Safety Review)는 10년 주기로 수행하도록 원자력법시행령에서 제42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서는 주기적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을 안전인자별로 기술하고 있으며 이중 경년열화평가(management of aging)는 안전에 중요한 설비의 경년열화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적절한 경년열화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행되는 주기적안전성평가 보고서에 관련 법령이 적절히 반영되고 있음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주기적안전성평가와 보고서에 반영되고 있음을 비교, 평가하였다.

연구용 원자로 2호기의 납셀 제염해체에서 방사성 폐기물 최소화

The Radioactive Waste Minimization from D&D Activities of
The Lead cell of KRR-2 Research Reactor

정경환, 이동규, 이근우, 정기정, 박진호

한국원자력연구소

요약

TRIGA Mark - III(KRR-2) 연구로의 운영과 더불어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을 위한 화학 처리 공정용 납셀이 건설 운영되어 왔다. 대전 하나로의 가동으로 1999년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을 중단한 후 모든 시설은 안전 저장 형태로 유지되어 왔으나, 해체 프로그램에 따라 2002년 납셀을 제염해체하게 되었다. 이 논문은 납셀의 제염해체를 통하여 발생된 폐기물 양을 최소화하고, 방사성물질의 생성을 피할수 있는 기술적 인자를 도출하였다.